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및 영 제15조, 제16조)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임원을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독립된 기구를 말합니다.

주요 임무는 해당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투표를 독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확인

(시행령 제16조)

관리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5(500세대 미만은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 및 서울시 준칙 기준), 위원의 사직·사퇴로 인하여 5(또는 3)명에 미달하는 경우 5(또는 3)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방식**으로 선출(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2항)합니다.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로 위촉하되, 각 추천권자가 추천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입주자 등 중에서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습니다(서울시 준칙 기준).

-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명
 - ② 통장이 추천한 자 2명 이내
 - ③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 ④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명 이내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함.)

법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①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령 15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명 이상 9명 이하
2.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3명 이상 9명 이하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시행령 16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